#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59

발의연월일: 2021. 4. 30.

발 의 자:송기헌·강득구·김남국

김민기 • 류호정 • 문정복

박성준 • 이광재 • 이상헌

정일영ㆍ허 영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고, 음주운전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소득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겪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을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충당하는 등 음주운전의 사회적해악이 매우 큼에 따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 건당 사망자 수)은 2명으로, 비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비해 18% 높은 등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

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 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남용 정도를 분석·평가하 는 내용을 포함하는 음주치료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93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 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 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 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남용 정도를 분석·평가하여 치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음주치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44조의2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8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제3호의2,"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 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 전한 경우 제13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4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의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 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적용례) 제 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신 설>	제 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①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 전방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 ⑤ (생 략) <신 설>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점검 또
- 는 정비를 위한 경우
- 2.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 안전 의무교육과는 별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남용 정도를 분석·평가하여 치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음주치료 의 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② -----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 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 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나. (생 략)

<u><신 설></u>

4. ~ 8. (생략)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
1. • 2. (현행과 같음)
0
3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44조의2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이미된 거ㅇㄷ ㅁ청됬니)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아이 단신인이가 되소인
경우
<u>'O I</u>
4. ~ 8. (현행과 같음)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
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은 이후에 제73조제2항 및 제6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지 아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없다.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 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 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 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 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 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 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
은 이후에 제73조제2항 및 제6
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지 아
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
<u>다.</u>
세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u>제3호, 제3호의2,</u>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 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4. ~ 2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생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현 략)

<신 설>

② (생 략) 제148조(벌칙)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
  - 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 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4. ~ 20.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행과 같음)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 44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방지 장치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48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음주운전방 지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